#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375

발의연월일: 2022. 11. 22.

발 의 자:조수진·김상훈·김선교

정경희 · 안철수 · 장동혁

임이자 · 서일준 · 유상범

전주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이 대규모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 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관 등 행사나 축제의 주최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주최 측이 없는 행사의 경우에는 법령 및 매뉴얼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최근 핼러윈 기간에 일어난 이태원 골목길 압사 참사 또한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음.

한편, 자원봉사자 등이 많이 참여하였는데 그들 또한 참사 당사자만 큼이나 심리적 충격이 크므로 심리안정을 위한 상담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최 · 주관하는 자가 없는 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경

우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심리상담 지원에 재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등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6 조제5항 및 제66조의11제1항).

#### 법률 제 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5항 전단 중 "사람"을 "사람(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6조의11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역축제가 예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 2. 주최·주관자 없이 진행되는 지역축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모 이상의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했 개 아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 ~ ④ (생 조 등의 지원) ① ~ ④ (현행 과 같음) 략)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 ----사람(긴급 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 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 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 구조지원요원을 포함한다)----⑥·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 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 전관리조치) ①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 해당하는 경우----

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 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② ~ ⑤ (생 략)

\_\_\_\_\_

-----

지2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역축제가 예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 획을 수립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 제를 개최하는 경우
- 2. 주최·주관자 없이 진행되는 지역축제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규모 이상의 사람이 모 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② ~ ⑤ (현행과 같음)